

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과 유만희 · 이소라 부위원장님

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
광진구 제3선거구 출신 국민의힘 김영옥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서울특별시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3조에 따라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사회복지협의회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노력해야 하는 책무가 있으므로, 안정적 사업수행을 도모하고자 그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.

□ 아울러,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사회복지협의회 회원에게 표창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모범적 사례를 확산하고 그에 따른 사기증진 및 예우를 하고자 하였습니다.

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☐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